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09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고민정·진선미·장철민

김한규 • 이병진 • 김동아

임호선 · 안태준 · 조인철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있어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라고 규정된 성범죄 가중 처벌 요소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고침.

이에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	
여 성적 <u>수치심</u> 이나 혐오감을	<u>불쾌감</u>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u>	불쾌
	<u> </u>
<u>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u> </u>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권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각</u>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 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 략)

불쾌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u>불쾌감</u>
②·③ (현행과 같음)